



#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2022. 9. 7.(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 [목차]

|                            |    |
|----------------------------|----|
| 1. 분과위원회 진행 경과             | 3  |
| 가. 제15차 회의                 | 3  |
| 나. 제18차 회의                 | 3  |
| 다. 제20차 회의                 | 4  |
| 라. 제21차 회의                 | 4  |
| 마. 제22차 회의                 | 5  |
| 2. 논의 배경                   | 5  |
| 가. 외국인·이주민의 수 및 관련 사건 증가   | 5  |
| 나. 법원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책무 | 6  |
| 다. 외국인·이주민 사법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  | 7  |
| 라. 논의의 필요성                 | 8  |
| 3. 외국의 외국인·이주민 사법지원 사례     | 9  |
| 가. 미국                      | 9  |
| 나. 일본                      | 10 |
| 다. 영국                      | 10 |
| 라. 캐나다                     | 11 |
| 마. 호주                      | 11 |
| 4.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지원제도 현황   | 12 |
| 가. 개선 논의 경과                | 12 |
| 나. 현행 통·번역인 선정 및 관리 제도     | 14 |
| 다. 외국인 재판 실무 정비            | 16 |
| 라. 외국인·이주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정책    | 17 |
| 5. 재판에서의 통·번역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 20 |
| 가. 통·번역인 평가 및 경력 구체화       | 20 |



---

|                                     |    |
|-------------------------------------|----|
| 나.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개선 .....            | 26 |
| 다. 통·번역인 교육 개선 .....                | 33 |
| 라. 대동 통역인의 통역능력 검증 및 강화 .....       | 35 |
| 마. 원격 통역 활용 .....                   | 37 |
| 6.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개선 방안 검토 ..... | 41 |
| 가. 사법절차 통·번역 연계 강화 .....            | 41 |
| 나. 외국인·이주민의 민원 응대 개선 .....          | 50 |
| 다. 온라인 접속 지원의 개선 .....              | 51 |
| 7. 종합의견 .....                       | 54 |
| 가. 재판에서의 통·번역 시스템 개선 방안 .....       | 54 |
| 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개선 방안 .....    | 54 |



## 1. 분과위원회 진행 경과

### 가. 제15차 회의

- 일시: 2021. 11. 15.(월) 14:25 ~ 15:45
- 위원장 인사, 위원 소개,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및 서기 지명
-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출범 경과 및 회부 안건 보고
  - 안건으로 회부된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에 관한 간사 보고가 이루어짐
  - 논의의 필요성 및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재판에서의 통·번역 시스템 개선,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요청
  - 향후 예상 일정 소개
-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등 논의
  -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안건에 주력할 위원들로 팀을 구성하고, 발제를 담당할 위원 선정
  -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한 후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기로 함

### 나. 제18차 회의

- 일시: 2022. 3. 7.(월) 15:00 ~ 17:50
-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에 관한 발제 및 토론
  - 주무위원이 외국인·이주민의 사법접근성에 관한 논의의 배경, 외국의 사례, 관련 현행 사법지원 제도 등을 검토한 후 논의 가능 주제를 도출하여 개별적 검토 내용 발제



- 여러 논의 가능 주제들을 제시: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개선, 통·번역인 교육 강화, 대동 통역인의 통역 능력 강화, 원격 통역 활용, 전국구 통역 콜센터 설치,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의 개선, 외부 기관과의 연계, 통·번역 관련 소송비용의 국고 부담,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개선 등

#### ▣ 향후 검토 계획 수립

- 향후 발제한 여러 논의 가능 주제를 선별하여 구체적 방안과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함

### 다. 제20차 회의

▣ 일시: 2022. 5. 23.(월) 14:00 ~ 16:00

#### ▣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선별하여 발제 및 토론

- 재판에서의 통·번역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개선, 통·번역인 교육 개선, 대동 통역인의 통역능력 검증 및 강화, 원격 통역 활용
-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관련 주요 내용: 전국구 통역 콜센터 설치,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의 개선, 외부 기관과의 연계, 온라인 접속 지원의 개선
- 주무위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찬반 또는 구체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 라. 제21차 회의

▣ 일시: 2022. 7. 18.(월) 14:30 ~ 15:40

#### ▣ 제20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보완 방안에 대한 발제

- 추가 발제 주요 내용: 통·번역인 평가 및 경력 구체화, (가칭) 사법절차 통·번역 논스톱 서비스
- 추가 발제한 방안에 대한 찬반 또는 구체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 ▣ 통·번역인 제도 관계자 심층인터뷰 계획

- 인증 통·번역인으로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통·번역인, 난민사건 등 외국인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 외국인·이주민 관련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직원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까지 참고하여 분과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을 도출하기로 함

### 마. 제22차 회의

▣ 일시: 2022. 8. 22.(월) 14:30 ~ 15:35

#### ▣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최종 발제

- 지금까지 논의·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보고서 초안 발제
- 재판에서의 통·번역 시스템 개선 관련: 통·번역인 평가 및 경력 구체화,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개선, 통·번역인 교육 개선, 대동 통역인의 통역능력 검증 및 강화, 원격 통역 활용
-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개선 관련: (가칭) 사법절차 통·번역 논스톱 서비스, 외국인·이주민의 민원 응대 개선, 온라인 접속 지원의 개선
- 실무자 심층 인터뷰(인증 통·번역인 2명, 법원 직원 2명, 변호사 2명) 결과 소개
- 발제 내용에 관하여 최종 토론

#### ▣ 향후 일정

- 최종보고서 보완 후 이메일 등으로 의견 수렴 예정
- 2022. 9.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최종보고서 보고 예정

## 2. 논의 배경

### 가. 외국인·이주민의 수 및 관련 사건 증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이주민 관련 분쟁 및 소송사건,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외국인·이주민인 형사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명, 건)

| 구분                        | 2010년     | 2012년     | 2014년     | 2016년     | 2018년     | 2020년     |
|---------------------------|-----------|-----------|-----------|-----------|-----------|-----------|
|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sup>1)</sup> | 1,261,415 | 1,445,103 | 1,797,618 | 2,049,441 | 2,367,607 | 2,036,075 |
| 결혼이민자 <sup>2)</sup>       | 141,654   | 148,498   | 150,994   | 152,374   | 159,206   | 168,594   |
| 국적 취득자 <sup>3)</sup>      | 42,698    | 33,450    | 35,632    | 50,957    | 50,193    | 47,066    |
| 외국인 범죄 건수 <sup>4)</sup>   | 19,069    | 26,634    | 31,255    | 44,022    | 36,242    | 41,243    |
| 외국인 1심 기소 건수              | 3,001     | 3,243     | 3,789     | 4,786     | 4,497     | 5,630     |

## 나. 법원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책무

### ▣ 법정에서의 통·번역 의무

-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은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통역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법원조직법」

제62조(법정의 용어)

-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합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를 포함), 국적 취득자는 제외
- 2)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혼인하였던 적이 있는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 외국인
-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4) 기소 및 불기소 사건을 모두 포함



####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 제143조(통역)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외국인·이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책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할 것을 규정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가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및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다. 외국인·이주민 사법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

### ■ 현행 법정 통역인 제도의 문제점

- 영어, 중국어 등 특정 언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통역인 후보자의 수가 부족하고, 특히 소수 언어의 통역인 후보자가 매우 적음
- 대부분의 통역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권 소재 법원에서 필요한 언어의 통역인을 찾기 어려움
- 법정 통역 후보자의 능력·수준에 대한 검증절차가 부족하여 통역인의 법정 통역이 부정확하다는 우려가 있음
- 법정 통역 후보자의 윤리·자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역인이 일방 당사자에 유리한 통역을 할 가능성이 있음



#### ▣ 법정 외에서의 통역에 관한 문제

- 외국인·이주민이 법원에서 통역인의 부재로 서류 접수, 절차 상담 등 민원 안내를 충분히 받기 어려움
- 외국인 사건이 많은 일부 법원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상담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수 언어의 경우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찾기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 비용 부담의 문제

- 형사 절차 외에 민사·가사·행정 절차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주민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있어서 통역이나 소송서류의 번역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외국인·이주민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절차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라. 논의의 필요성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주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이주민 관련 분쟁 및 소송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규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재판절차 안팎의 통·번역 관련 문제점으로 인하여 외국인·이주민이 사법절차 내에서 충분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이주민은 언어적 한계,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절차에서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언론에서도 통역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법원 내부에서도 통·번역의 정확성 부족과 통·번역인 확보의 어려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통·번역인 풀(pool)의 제한, 소수 언어 통·번역인 확보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법원은 이미 외국인·이주민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중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거나 외국인·이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들이 있으므로,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현행 제도들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외국의 외국인·이주민 사법지원 사례

#### 가. 미국

##### ▣ 연방법원의 법정 통역관 제도

- 법원이 통역사무소를 운영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통역관을 둠
- 외국인·이주민 형사재판에 관한 법정 개정 시 통역관이 동반 출정
- 판사의 특별 요청이 있으면 민사재판에서도 통역관 지원 가능

##### ▣ 연방법원의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 제도

- 외국인 대변 목적이라는 특정 조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로스쿨 학생 등을 통하여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법률서비스 지원

##### ▣ 주 사법접근위원회(State Access to Justice Commissions)

- 주로 저소득층 등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법 접근성을 증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함
- 문화, 언어, 인종,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추구하고, 영어 비숙련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가 주요한 활동내용 중 하나

##### ▣ 무료 법률지원 제도

- 일리노이 대법원, 오하이오 대법원, 콜로라도 대법원 등은 변호사협회, 사회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변호사로 하여금 매년 일정 시간의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활동(pro bono)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그 명단을 관리함



## 나. 일본

### ▣ 통역인 및 후보자 선정

- 각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에서 재판관이 통역인 지원자를 면접하여 통역인으로서 적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면 형사절차 개요나 법률용어,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통역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함
- 최고재판소는 통역인 소개기관 및 단체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대사관, 영사관에 협력을 의뢰하여 통역인 후보자 명부를 정리하며, 각 재판소에서는 지방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통역인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역을 의뢰할 때 참조함
- 새로운 통역인의 확보를 위해 명부에 이미 등재된 통역인의 추천을 활용하고, 대사관, 영사관, 대학교, 외국어 전문학교, 방송국, 무역협회 등에 새로운 통역인 후보자의 소개를 의뢰함
- ‘일본사법통역사연합회’에서는 법정 통역, 경찰통역에 필요한 전문성 및 통역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사법통역 기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재판소는 통역인 명부에 등재할 때 사법통역 기능검정시험 통과 여부를 하나의 자료로 활용함

### ▣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전국의 고등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에서 통역인 후보자에 대하여 법정통역 경험에 따라 다양한 연수 실시
  - 형사절차에 대한 강의, 모의통역실습, 재판방청, 좌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각 지방재판소에서 법정 통역인 연구회를 개최하여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여 실무에 반영하고, 새로운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다. 영국



## ▣ 국가의 통역인 관리

- 국가가 통역인의 능력이나 통역 수준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공판 준비단계에서부터 국가 비용으로 서류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형사절차 법률구조(Legal Aid) 프로그램

- 법무부 산하 법률서비스위원회는 경제적 빈곤자로서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법정 절차를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자문·조력·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변호사의 대리 허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함

## 라. 캐나다

### ▣ 모든 형사 피고인에 대한 통역 지원

- 모든 형사 피고인은 기소된 위법사실의 경중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을 지원받음

### ▣ 의무 변호인(Duty Counsel)

- 법률구조 프로그램에 의해 비용을 지불받는 변호사로서 ‘법원 내 응급실 의사’로 이해되고 있고,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일회성 자문, 정보 제공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함

### ▣ 법원 선임 변호인(Court-Appointed Counsel)

- 중대 범죄 등 1회성 법률 조력만으로 불충분한 사건 또는 의무 변호인(Duty Counsel)의 조력 거절 등의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음

## 마. 호주

### ▣ 국립 통·번역서비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 연방정부의 이민과 국경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의 직속기관으로, 비영어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다자간 즉석전화통역, 예약전화통역 및 현장통역서비스를 제공

- 호주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고, 2,900명 이상의 통역인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160개 이상의 언어를 통역함
- 법원창구에서 다자간 전화통역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재판과정이나 재판 외 법률상담 시에도 전화통역, 현장통역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 통역인들은 호주 통·번역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음
- 연방법원은 법원 창구에서 비영어 사용자의 경우 TIS의 다자간 전화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은 법원이 부담함

#### ■ 지역 커뮤니티 법률센터

-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의 허가나 기부에 의해 지역마다 설치된 비영리기관으로서, 외국인·이주민에게 무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음

## 4.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지원제도 현황

### 가. 개선 논의 경과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2기)의 논의 및 건의문 채택

- 2014년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건의문 채택

##### ■ 지향점

-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책무가 있고,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
- 장애인과 외국인·이주민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법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 개선방안

- 법원에 장애인,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사법지원서비스를 집중하여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법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사법지원관을 두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전문적 사법지원이 제공되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되, 형식적·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사법지원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어 법률정보자료 확충, 정확한 통역을 위한 교육 강화, 변호사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공익 활동과 연계한 사법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내 지원인력 확충과 예산확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전국 법원에 외국인·이주민의 민원응대를 전담하는 외국인 전용창구, 장애인과 외국인·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지원을 전담하는 우선지원창구가 순차로 설치되었음

####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및 건의문 채택

- 2018년 ‘수요자 중심의 사법접근성 강화’에 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건의문 채택

##### ■ 수요자 중심의 사법접근성 강화 -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

1. 사회경제적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법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히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외국인·이주민 등도 사법서비스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과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등을 통한 통역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와 함께 나홀로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전담지원관이 그 업무 수행을 전담하는 사법접근센터가 전국 4개 법원에 설치되었고,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가 시행되었음

## 나. 현행 통번역인 선정 및 관리 제도

### ▣ 법정 통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

- 인증평가의 개요
  - 각급 법원이 통번역인 후보자를 선정하고 명단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번역인이 법정 통역에 필요한 통·번역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하는 제도(법원행정처 주관)
  - 인증 평가에서 총점 80점 이상이면 '인증 통·번역인'으로, 총점 70점 이상이면 '준인증 통·번역인'으로 분류
- 인증평가의 출제 방식
  - 필기시험(20점): 객관식 10문제(형사 7, 가사 2, 민사 1), 번역 1문제(형사)
  - 구술시험(80점): 총 4문제(형사), 실제 통역하는 구술을 녹취한 후 이를 평가함. 대화통역 1문제(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 순차통역 2문제(판결 이유, 피고인 진술), 시역<sup>5)</sup> 1문제(형사 판결 선고 시 부수처분 등의 고지 내용)로 구성

5) 한국어로 기재된 문장을 읽고 외국어로 통역하는 것을 의미함



- 2019. 10.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최초 실시
  - 23개국 언어, 416명이 응시하였고, 인증자 84명, 준인증자 102명 배출
  - 몽골어, 아랍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소수 언어에서 통·번역인 확보
- 2021. 12.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 26개국 언어, 685명이 응시하였고, 인증자 130명, 준인증자 121명 배출
- 전국 법원에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명단을 공유하여 각급 법원에서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전국 법정 통·번역인 교육 실시

- 2020년~2021년 및 2021년~2022년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및 각급 법원 통·번역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통·번역인 교육(원격 영상 강의) 실시
- 교육을 수료할 경우 인증자격 갱신 여부 판단 등에 활용됨

#### ▣ 법정 통역인 편람

- 통역인이 법정 통역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기일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및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의 각 절차를 소개하여 통역인이 법정 통역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2005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몽골어, 러시아어 발간
- 2016년: 필리핀어, 프랑스어, 파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독일어 발간
- 2020년: 네팔어, 힌디어, 미얀마어, 아랍어, 싱할라어, 우즈베크어, 암하라어, 말레이어, 중국어(중문) 발간

#### ▣ 현행 통·번역인 선정 및 관리 제도의 평가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및 전국 법정 통·번역인 교육은 시행 초기임에도 순조롭게 정착하는 단계에 있음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지만, 외국인 전담 형사재판부 등 외국인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재판부는 법정 통역인으로 인증 통역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전국 법원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법정 통역인 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여전히 인증 통·번역인의 통·번역 능력이 기대 이하라거나 소수 언어의 인증 통·번역인 및 지방권 소재 법원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 통·번역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법정 통·번역인 교육은 매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음

## 다. 외국인 재판 실무 정비

###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정 및 개정

- 2004년 통·번역인 선정 및 보수 지급 방법과 외국인 피고인을 배려하기 위한 절차 규정
- 2013년 통·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통·번역인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2020년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행의 근거 마련 및 사무 처리 지침 규정

### ▣ 외국인재판실무편람

- 2003. 2. 발간
- 민사·가사·형사 사건에서 외국인 관련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법령상 근거와 주의점, 진행 요령 등을 정리

### ▣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 피고인이 외국인인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두어 외국인 관련 형사 절차에서 유의할 점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외국인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 ▣ 현행 외국인 재판 실무의 평가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이하 ‘통번역예규’)의 제·개정, 외국인재판실무편람의 발간,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외국인 재판 실무에서 통일성을 꾀하고, 외국인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재판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음
- 다만 외국인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에서는 통번역예규의 숙지도나 외국인재판실무편람의 활용도가 낮은 편임

## 라. 외국인·이주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정책

### ▣ 외국인 전용창구·우선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 설치

- 외국인 전용창구
  - 외국인·이주민이 재판절차 등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법원 시설 이용 및 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업무를 전담
  - 전국 법원에 28개소 설치
- 우선지원창구
  -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전담
  - 전국 29개 법원에 설치
- 사법접근센터
  - 외국인 전용창구,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창구, 법률상담창구를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업무 수행을 전담하는 전담 지원관을 둠
  - 특히 사법접근센터는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약자의 수요에 맞게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



- 전국 4개 법원에 설치

● **특징**

- 외국어 능통자가 근무하거나 다자간 전화 통역서비스를 위한 시설 구비
- 외국인을 위한 소송절차 안내서와 재판양식 구비 및 제공
- 외국인을 위한 민원상담 및 청사 내 위치 안내
- 외국인 사건 및 문건 접수 보조
- 외국인·이주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명단 안내

▣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JIFI) 개설**

- ‘<http://jifi.scourt.go.kr>’ 또는 ‘<https://jifi.scourt.go.kr/foreigner/main/Main.work>’ 로 연결
-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법원 소개, 민사·형사가사 등의 소송절차 안내, 법원 위치 등 정보 제공
- 법원안내, 소송절차안내, 민사·형사가사 절차의 안내문, 재판양식 등의 자료를 16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워드, 한글, PDF 파일 형태로 제공
-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

▣ **통합통역 네트워크 시행**

- 2022. 1. 3.부터 통역안내도우미 미배치 법원·지원에 민원 통역 지원을 위하여 화상회의 프로그램(VidyoConnect)으로 영상통역을 지원

▣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 법원행정처는 2019년 및 2021년 한국어, 영어 등 21개 언어로 ‘소송구조제도안내’를 발간하여 외국인·이주민에게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고 있음
-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난민사건에서 통역료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직권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있음



## ▣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특정 외국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소송구조 변호사 명단을 미리 마련해두어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소송구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송구조 리플릿’을 14개 언어로 번역하여 비치

## ▣ 각급 법원의 노력

- 일부 법원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다산콜센터(전화번호: 120), 신한은행의 외국인 전용 콜센터(전화번호: 1577-8380) 등 다자간 전화 통역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등 각 가정법원은 다국어 재판절차 안내문 및 자료를 발간·게시하고, 다문화 가족용(13개 외국어) ‘부모’ 책자와 동영상 게시함
- 광주가정법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 크기의 안내문을 제작·배부함
-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 특강

## ▣ 현행 외국인·이주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 그동안 법원의 다양한 노력으로 외국인·이주민의 사법접근성이 제고되었음
- 특히 외국인 전용창구, 우선지원창구 및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와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민원안내 담당자 지정으로 인하여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민원응대가 체계화·전문화되었고, 이로써 외국인·이주민이 법원 민원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은 다소 해소되었음
- 또한 법원의 노력으로 저소득층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소송구조가 활성화



되었고, 외국인·이주민이 소송구조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여전히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통번역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고, 특히 소수 언어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민원은 전담지원관도 응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5. 재판에서의 통번역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 가. 통번역인 평가 및 경력 구체화

#### 1) 개요

- 법정 통번역인의 통번역 능력 등 자질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통번역인 후보자의 경력을 구체화하여 표시함

#### 2) 현황 및 필요성

##### ▣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통번역인 선정

- 각급 법원은 매년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함
-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 및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명단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각급 법원에서 통번역인 선정 시 참고할 자료로 제공함
- 재판부는 통번역인 명부조회 프로그램에서 통번역인의 통번역 언어, 경력 등을 조회하여 통번역인을 선정함

##### ▣ 통번역인에 대한 평가 체계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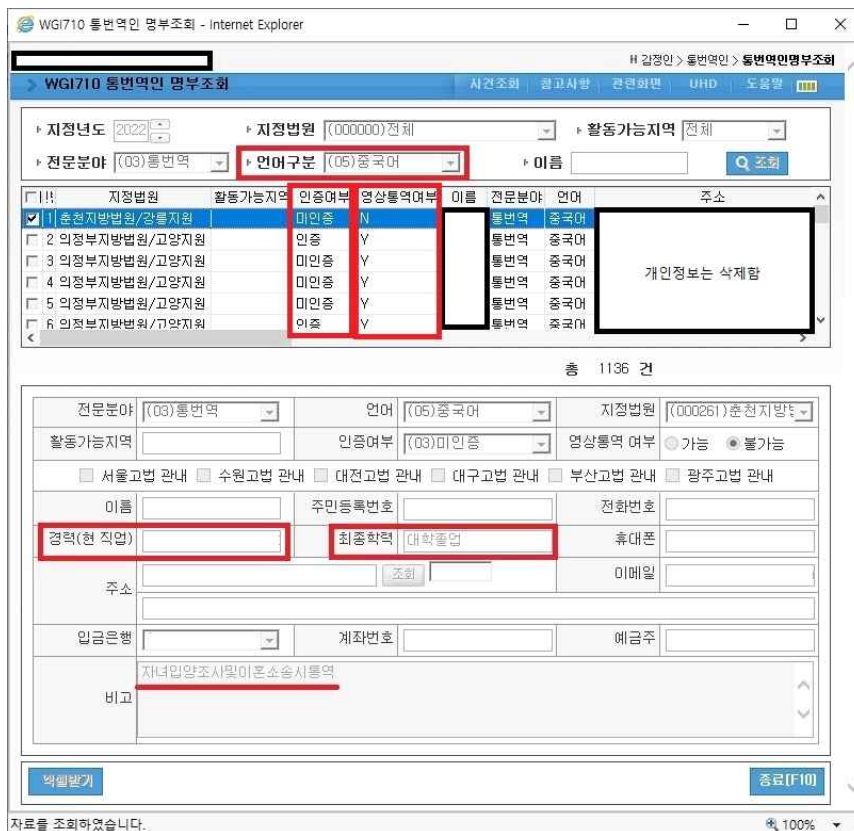
- 통번역인에 대한 평가 체계가 부재하여 실제 재판에서의 통번역 능력과 경력을 토대로 적절한 통번역인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
- 감정인 평정과 같이 체계를 갖추어 통번역인의 능력을 평가하면, 다른 사



건에서 통·번역인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고, 인증 통·번역인의 인증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음

■ 통·번역인 선정 시 고려 가능한 정보의 제한

- 현재 재판사무시스템 통·번역인 명부조회 프로그램(WGI710)에서 조회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통·번역인 후보자의 통·번역 가능 언어, 경력(현 직업), 최종 학력, 인증(준인증) 여부, 영상통역 가능 여부에 한정되어 있음
- 비고란에서 미인증 통·번역인에 대하여 ‘자녀 입양조사 및 이혼소송 시 통역’, ‘의정부지법 통역 2회’, 법원 통역 기간 등 통·번역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에 대하여는 인증(준인증) 여부만을 기재할 뿐임



- 통·번역예규 제6조 제1항은 각급 법원에서 통·번역인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를 제출받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번역인 명부조회 프로그램에서는 위 경력카드에서 제



시하는 구체적인 경력 사항 중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 경력카드에는 현 기관 근무 연수(통·번역인 후보자 지정년도), 통·번역 희망 분야 (의료, 건설, 환경 등 전문분야), 자격, 주요 경력, 법원 통·번역인 경력, 주요 저서 및 논문, 소송 사건 당사자 경력, 형사처벌 경력 등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산프로그램에서는 각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전산프로그램에 통·번역인 후보자의 활동가능지역을 표시하는 기능은 있으나, 실제로 활동가능지역이 표시된 통·번역인 후보자는 매우 드물어서, 원거리에 있는 통·번역인 선정 시 해당 법원에서도 통·번역이 가능한지 일일이 연락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3) 통·번역인 평정 체계의 도입

#### ■ 통·번역인 평정의 의무화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는 감정인 평정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번역예규에서도 통·번역인 평정을 의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예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제17조 (통역·번역인 평정)  
통역·번역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통역·번역 업무가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은 『통번역 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역·번역인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통·번역인 평정 프로그램의 구축

- 통·번역인 평정 프로그램의 구축에 있어 참고할 만한 것으로 감정인 평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② 감정구분, ③ 감정내용의 충실도, ④ 감정인의 중립성, ⑤ 감정기간, ⑥ 감정료, ⑦ 평점, ⑧ 평가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WG1305 감정인 관리 - Internet Explorer

H (월) 감정인 > 감정인 평정표 관리

WGI305 감정인 평정표 관리

사건조회 | 결과사람 | 관련화면 | UHD | 도움말

지정년도: 2022 | 전제년도 | 병원: (000000)전제 | 조회

감정구분: (09)특수 | 감정인명

| 연번 | 연도   | 병원         | 상대 | 감정인 | 주민등록번호 | 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종지해제 |
|----|------|------------|----|-----|--------|-----|---------|------|
| 1  | 2022 | 부산지방법원     | 정상 |     |        |     |         |      |
| 2  | 2022 | 부산지방법원     | 정상 |     |        |     |         |      |
| 3  | 2022 | 대전지방법원 환안지 | 정상 |     |        |     |         |      |

감정인평정표

총 9 건

| 사건번호 | 사건명 | 감정구분 | 감정내용의 충실도 | 감정인의 중립성 | 감정기간 | 감정료 | 평점 | 평가의견             |
|------|-----|------|-----------|----------|------|-----|----|------------------|
|      | 대여금 | 특수   | 2         | 3        | 3    | 3   | 11 | 평가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사 |

총 1 건

\* 2009.12.07 이후에 선정된 감정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 이전 결과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엑셀다운 | 종료(F10)

자료를 조회하였습니다. 100%

- 감정인 평정표를 참고하여 통·번역인 평정표를 작성한다면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할 수 있음

|            |  |         |                 |     |  |
|------------|--|---------|-----------------|-----|--|
| 사건번호       |  | 사건명     |                 | 재판부 |  |
| 통·번역인 성명   |  |         |                 |     |  |
| 통·번역 언어    | <input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일본어 <input type="checkbox"/>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베트남어 <input type="checkbox"/> 태국어 <input type="checkbox"/> 필리핀어<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통·번역 여부    | <input type="checkbox"/> 통역 <input type="checkbox"/> 번역 <input type="checkbox"/> 통역 및 번역   |         |                 |     |  |
| 통·번역기일     |  | 통·번역 내용 | 예시) 중국인 증인신문 통역 |     |  |
| 평 가        |  |         |                 |     |  |
| 평정요소       | 평정내용   |         |                 |     |  |
| 통·번역의 정확성  | <input type="checkbox"/>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평균 2점, <input type="checkbox"/> 평균 이하 1점  |         |                 |     |  |
| 통·번역인의 중립성 | <input type="checkbox"/>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평균 2점, <input type="checkbox"/> 평균 이하 1점  |         |                 |     |  |
| 법률용어의 이해도  | <input type="checkbox"/>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평균 2점, <input type="checkbox"/> 평균 이하 1점  |         |                 |     |  |
| 의견란        | 예시) 해사 관련 사건에서 정확한 통역을 하였음   |         |                 |     |  |
| 종합평정점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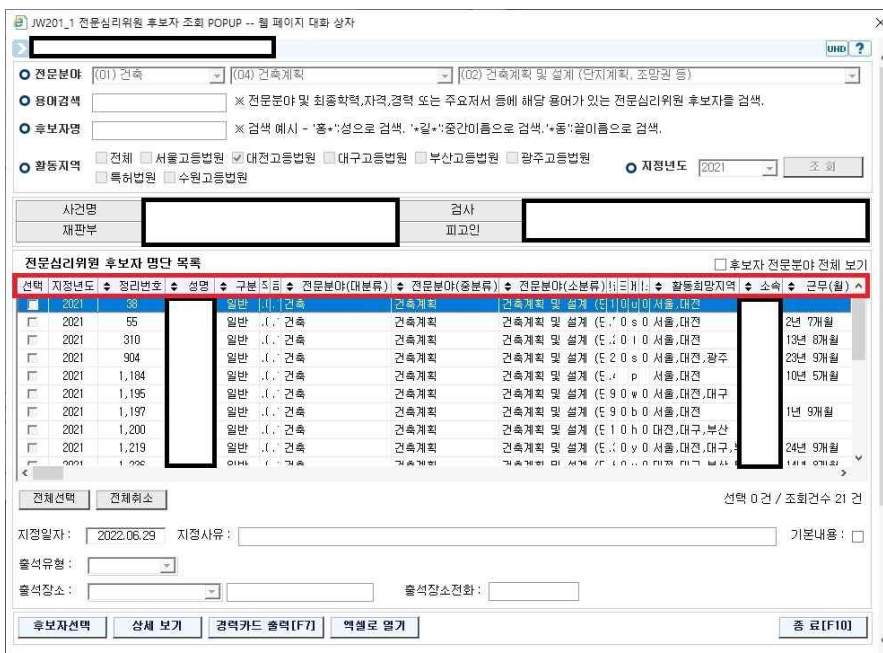


- 다만 감정인에 대한 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종합 평정만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부가적으로 평가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정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통번역인 평정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

#### 4) 통번역인 경력의 구체화

##### ▣ 통번역인 후보자의 구체적인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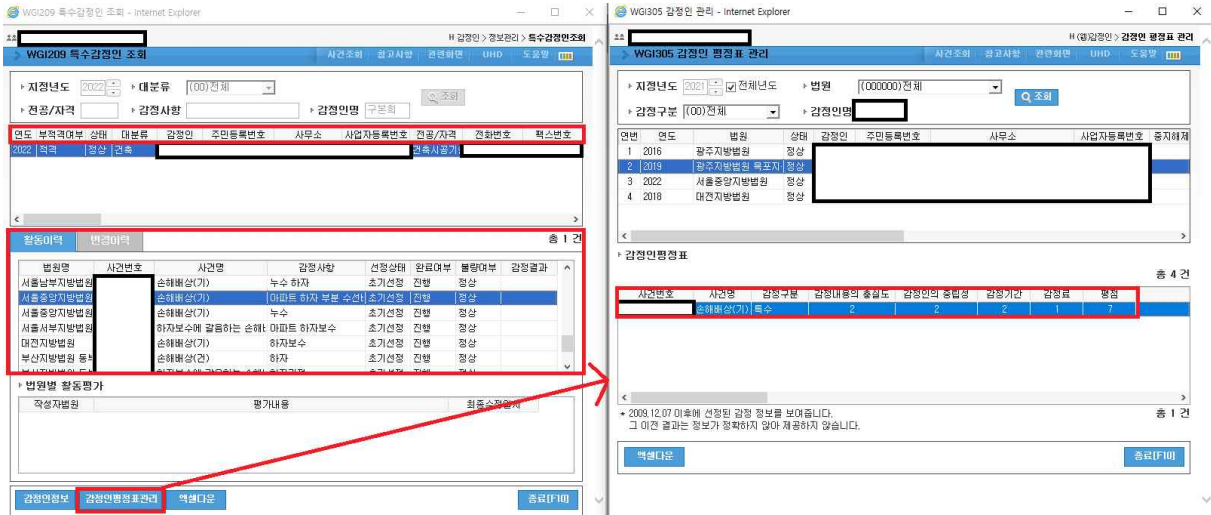
- 통번역인 후보자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으나, 프로그램에서는 통번역인 후보자의 제한된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통번역인 후보자의 경력카드에 기재되는 구체적인 경력 사항을 통번역인 후보자 조회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조회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함
-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조회 프로그램(JW205)에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전문분야(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소속기관 및 근무 연수, 후보자 임명일자, 자격, 주요 경력, 감정인 경력 여부, 주요 저서, 소송당사자 경력, 형사처벌 경력 여부, 특기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경력카드 자체를 조회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한편 감정인 조회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감정인 후보자의 감정 경력으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및 감정사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감정인에 대한 평정표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및 감정인 조회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통·번역인 조회 프로그램에서 통·번역인 후보자의 경력 사항과 법정 통·번역 경력 및 통·번역인에 대한 평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경우 외국인·이주민에게 적절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번역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통·번역인이 법원에서 통·번역을 한 경험이 있는지, 어떤 사건에서 어떤 내용의 통·번역을 하였는지는 통·번역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주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법원 감정 경력 표시와 같이 통·번역인의 법원 통·번역 경력을 구체화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통역 가능한 언어를 표준어 및 방언별로 세분화**

- 중국인, 필리핀인 등 일부 외국인은 방언을 사용하여, 표준어만을 사용하는 통·번역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표준어 외에도 사용 가능한 방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통·번역인 후보자 조회 프로그램에서 소분류로 방언 통·번역 여부를 표시할 경우 방언을 사용하는 외국인·이주민에 대하여 적



절한 통·번역인을 선정하기 용이함

- 이를 위해서는 통·번역인을 소집하거나 후보자로 등록할 때 해당 통·번역인 후보자가 통·번역할 수 있는 외국어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어의 방언에 대한 통·번역 가능 여부도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함

## 5) 분과위원회 및 실무자 의견

### ■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통·번역인 후보자를 평가하고 경력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견
- 한편 감정인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곧바로 통·번역인 평가 시스템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후기를 남기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
- 점수화 내지 주관식 항목보다는 해당 통·번역인의 실적·횟수 등 통계적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

### ■ 실무자 의견

- 법원 직원은 통·번역인을 평가하고 경력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적절한 통·번역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

## 나.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개선

### 1) 현행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의 문제점

#### ■ 법관·참여관·실무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 2020년 법원 내 설문조사 결과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통·번역인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 긍정적(48.0%), 부정적(52.0%)
  - 통·번역인 인증제 활용 여부: 부정적(65.2%)



- 인증 통·번역인 활용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긍정적(78.3%), 부정적(0.8%)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68.4%), 부정적(1.2%)
- 현재도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등 외국인·이주민 당사자의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재판부나 법원 통·번역인을 제외하고는 법원 직원 및 변호사의 인증 통·번역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
- ① 인증된 통·번역인이 부족하고, ②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인증 통·번역인이 있으며, ③ 인증 통·번역인의 활동 가능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활용 현황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 및 전체적인 활용도는 높지 않으나,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활용한 경우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았고,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1명당 법정 통·번역인 지정 건수가 미인증 통·번역인보다 높음

[2020. 4. ~ 2020. 10. 형사공판사건에서의 통역인 지정 건수<sup>6)</sup>]

| 구분      | 통역인 지정 건수 및 비율 | 1인당 지정 건수 |
|---------|----------------|-----------|
| 인증 통역인  | 414 (19.5%)    | 4.1       |
| 준인증 통역인 | 389 (18.3%)    | 3.5       |
| 미인증 통역인 | 1,318 (62.1%)  | 1.5       |
| 합계      | 2,121 (100%)   | 2.0       |

[2020. 4. ~ 2020. 10. 형사공판사건에서의 번역인 지정 건수]

| 구분      | 통역인 지정 건수 및 비율 | 1인당 지정 건수 |
|---------|----------------|-----------|
| 인증 번역인  | 74 (10.5%)     | 0.7       |
| 준인증 번역인 | 164 (23.3%)    | 1.4       |
| 미인증 번역인 | 464 (66.0%)    | 0.6       |
| 합계      | 702 (100%)     | 0.7       |

- 법원 전체 구성원의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으나,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난민사건 전담재판부 등 외국인 사

6) 각급 법원에 조회하여 파악한 결과임, 이하 같음



건을 주로 처리하는 재판부는 우선적으로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여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2) 개선 방안

### ■ 통·번역인 풀(pool)의 확대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의 문제점으로는 소수 언어 통·번역인의 부족,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소수 언어 통·번역인의 부족 및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통·번역인 부족 문제는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자체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행 법정 통·번역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통하여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소수 언어 통·번역인의 부족 및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작다는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의 시행으로 더 많은 통·번역인을 확보할 수 있음
  - 2021년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에서는 2019년 대비 인증자 및 준인증자 증가: 인증자 84명 → 130명, 준인증자 102명 → 121명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가 아직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에서 더 많은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음
- 평가 지역 확대를 통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유능한 통·번역인 확보 필요
  - 2019년 인증평가는 서울에서 실시하였고, 2021년 인증평가는 서울, 부산, 여수에서 실시하였는데,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의 수가 증가하였음
  - 평가 지역의 확대가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거주 지역과 평가 지역의 근접성이 제고된다면,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에 관심이 있는 통·번역인을 유인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 법원 대내 적극적인 홍보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에 대한 법원 내부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에 지원하는 통·번역인의 수와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선순환 효과 기대
-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활용할 경우 수준 높은 통·번역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이주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질 향상, 간결하고 정확한 통·번역으로 인한 재판 부담의 경감 등 재판부에도 장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음
- 주기적인 공문 시행,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등을 통하여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안내하고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재판부는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제도를 잘 알고 있고, 가능한 범위에서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외국인 사건이 많지 않은 재판부에서는 통·번역인 인증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 인증 통·번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

- 통·번역예규상 통역인에게 지급할 통역료는 최초 30분에 대하여 7만 원, 이후 추가되는 30분마다 5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통역인의 전문성, 인증 통역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음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제일 2004-5)】

제10조 (통역·번역료 산정 기준)

통역·번역인에게 지급할 통역·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제7조의3에 의한 인증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 통번역예규상 통·번역료 산정기준은 위 예규가 제정된 2004년 이래 증액된 바가 없고, 현재의 통역 실무상 책정되는 통역료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많음<sup>7)</sup>
  - 다만,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법무부훈령)상 난민 통역인에게 통역료는 30분당 25,000원이고, 수사기관이 통역인에게 지급하는 통역료가 시간당 30,000~35,000원이므로, 법원이 통역인에게 지급하는 통·번역료가 타 국가기관에 비교하여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시행 이후 보수 증액 비율이 인증 통역인은 40.5%, 준인증 통역인은 28.7%로, 미인증 통역인 15%보다 높음

[2020. 4. ~ 2020. 10. 통역인(번역인) 보수 증액 현황]

| 구분           | 보수증액 건수   | 지정건수 대비 보수증액 비율 |
|--------------|-----------|-----------------|
| 인증 통역인(번역인)  | 168 (9)   | 40.5% (12.1%)   |
| 준인증 통역인(번역인) | 112 (21)  | 28.7% (12.8%)   |
| 미인증 통역인(번역인) | 199 (122) | 15% (26.2%)     |

- 통번역예규상 인증 통·번역인에 대한 보수를 증액한다면 통·번역인이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에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다만 획일적으로 인증 통·번역인에 대한 통·번역료를 증액하는 것은 예산상의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 통·번역인에 대하여는 부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오히려 각 재판부에서 인증 통·번역인의 통·번역 능력 및 재판에서 도움이 된 정도에 따라 통·번역료를 증액함으로써 유능한 통·번역인의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7) 통·번역인 매칭 애플리케이션인 '와블'에서 확인한 결과, 영어로 순차통역을 하는 일반 통역사의 1시간당 예상 통역료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베트남어 통역의 경우 2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확인됨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통·번역료를 책정할 수도 있음 ⇨ 보수 증액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필요

#### ■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대외 홍보

- 유능한 통·번역인이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에 지원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인·이주민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자들이 비교적 자주 접하는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 주체인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센터의 통역 자원봉사자,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에 숙달하여 법정 통역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국제통번역협회(IITA) 등의 통번역인협회에 협조를 구하여 홍보를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
-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의 동의를 얻어 외부 기관에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명단을 제공하고, 외부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번역인 명단을 제공받을 수도 있음
  - 통·번역인은 통·번역 업무를 취급할 기회가 많아지고, 법원 및 외부 기관은 통·번역인 후보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법무부는 2022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하였고(30개 언어, 160명), 각급 검찰청 및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각 기관과 협조할 수 있음

### 3) 분과위원회 및 실무자 의견

#### ■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법원 대내외 홍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증 통·번역인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
- 한편 법원이 통·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준이 일반 통·번역업계에서 수수하는 보수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현재의 보수 수준을 통·번역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우수한 통·번역인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더하여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지거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통·번역이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할 만한 별도의 전문 통·번역인 풀(pool)을 갖추고 전문 통·번역인에게 지급할 통·번역료의 산정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다만, 이는 통·번역업계의 보수 수준, 전문 통·번역인이 필요한 사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본 분과위원회는 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함

#### ■ 실무자 의견

- 인증 통·번역인으로 지정된 이후 근소하게 법정 통·번역 기회가 증가하였고, 특히 기존의 활동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소재 법원에서의 통·번역 기회가 증가하였다는 인증 통·번역인의 의견이 있음
-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에 대한 통·번역료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인증 통·번역인의 의견이 있는 반면, 통·번역대학원을 수료하는 등의 전문 통·번역인이 아닌 이상 현재 법원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법정 통·번역인들은 법원이 지급하는 통·번역료에 만족하는 편이므로, 현재의 통·번역료 지급 기준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법원 직원들은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에 대한 통·번역료를 증액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음
- 다만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이 일반 통·번역인보다 우수한 통·번역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의 통·번역료 증액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법원 직원의 의견이 있는 반면,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이 일반 통·번역인보다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법원 직원의 의견도 있었음
- 한편 거주지 외 소재 법원에서 통·번역할 경우 법원에서 지급하는 여비가 실





제 지출하는 여비보다 현저히 적어 여비 기준이 상향되어야 하고, 여비를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원격 통역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인증 통역인의 의견이 있었고, 같은 취지에서 법원에 출석하는 데 필요한 실제 여비보다 여비 기준상 지급할 수 있는 여비가 적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법원 직원의 의견도 있었음

## 다. 통번역인 교육 개선

### 1) 전국 법정 통번역인 교육 현황

#### ■ 교육 대상

-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및 각급 법원 통번역인 후보자

#### ■ 교육 내용

- 형사재판절차의 이해(57분)
- 법정 통번역인 현황 및 직무와 역할(64분)
- 법정 통번역 기법(언어공통,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40~60분 가량)
-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안내(30분)

### 2) 개선 방안

#### ■ 교육 내용의 충실화

- 법정 통번역인 평가 문제 및 통번역인 교육 내용이 형사 재판절차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형사 재판절차 외에도 민사·가사 절차에서 필요한 내용에 관한 강의를 추가 개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사절차에서는 외국인·이주인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사 절차에 관한 강의 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강의형 교육 외에도 모의 통역 실습(모의재판), 재판 방청, 간담회(법관, 직원, 검사, 변호사 등) 등의 참여형 교육과 같이 다양한 교육 기법 개발



필요

#### ■ 교육 대상의 확대

-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및 각급 법원 통·번역인 후보자 외에도 법정 통·번역인을 희망하는 외국어 능통자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향후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에서 이를 고려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통·번역인이 인증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교육 내용이 법정 통역에 필요한 사항 및 인증평가의 안내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교육을 충실히 수료할 경우 법정 통·번역 능력을 향상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법정 통·번역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및 각급 법원 통·번역인 후보자가 아닌 통·번역인에게는 법원의 통·번역인 교육제도를 알리기 어려우므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 외부 기관과의 협력

-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법원의 통·번역인 인증 및 교육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외부 기관과 관련이 있는 통·번역인이 법원의 인증평가 및 교육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할 수 있음
  - 법정 통·번역인 교육에는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을 수료할 경우 자연스럽게 인증평가에 대한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교육과정을 공동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원의 통·번역인 후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통·번역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통·번역에 공통점이 많으므로, 양 절차에서의



통·번역 내용을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번역인 후보자에게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3) 분과위원회 및 실무자 의견

#### ■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통·번역인 교육 내용의 강화, 교육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

#### ■ 실무자 의견

- 법원에서의 통·번역 교육 내용이 실제로 법정 통·번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인증 통·번역인의 의견
- 다만 단순한 통역 기술과 형사사건에 치중된 교육내용보다 일반적인 법률 용어나 민사가사 사건의 재판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인증 통역인의 의견이 있었음

## 라. 대동 통역인의 통역능력 검증 및 강화

### 1) 현황 및 필요성

- 민사가사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대동하는 통역인에 의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외국인·이주민 중 통역료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지인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이주노동자센터 등에서 해당 국가 언어를 지원하는 상담직원, 통역 자원봉사자 등을 통역인으로 대동하는 경우가 많음
- 대동 통역인은 전문 통역인이 아니어서 통역이 정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 편향된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 2) 대동 통역인의 통역능력 검증 방안



## ▣ 기초적인 통역능력의 검증

- 대동 통역인이 법정 통역에 앞서 기초적인 통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여 재판부가 대동 통역인에게 통역을 맡길 것인지 고려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정 통역에 필요한 외국어 예문을 제시하고 대동 통역인이 예문을 한국어로 통역하게 하여보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음 [아래는 법정 통역인 편람의 재판상 이혼절차편에서 인용]

- 피고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죠?  
Bị đơn nộp yêu cầu phân tố trong khi nguyên đơn đã yêu cầu ly hôn với lý do bị đơn đã đối xử tệ với mình và yêu cầu tiền bồi thường đúng không?

-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일치하는 것은 맞나요?  
Hai bên đồng sự thống nhất ý định sẽ ly hôn với nhau đúng không?

- 그렇다면 쟁점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산분할 여부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누구로 하여야 하느냐가 되겠군요.  
Nếu vậy thì điểm gây tranh cãi ở đây sẽ là nguyên nhân phá hỏng hôn nhân là do ai, có phân chia tài sản hay không và ai sẽ là người được chỉ định làm người giám hộ và nuôi dưỡng con.

- 원(피고) 대리인, 여기까지 내용 중 추가로 보충할 것이 있는지요?  
Người đại diện của nguyên (bị) đơn có điều gì muốn bổ sung thêm trong số các nội dung cho đến giờ không?

- 원(대리인)부터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Bắt đầu từ người đại diện của nguyên đơn, hãy giao nộp chứng cứ và trình bày mục đích chứng minh.

- 갑 제1호증의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까?  
Bên A hãy giải thích về nội dung của chứng cứ thứ 1.

- 피고 대리인, 원고가 신청한 서증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Hãy trình bày ý kiến về chứng cứ mà người đại diện của bị đơn, nguyên đơn đã đăng ký.

-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는 가사조사관에 의한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하겠습니다.  
Trước tiên, Tòa sẽ ra lệnh cho nhân viên điều tra gia đình tiến hành điều tra gia đình thông thường đối với vụ án này.

- 현재 원고가 자녀를 돌보고 있어서 피고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Hiện tại theo nhận định thì đây là tình huống mà nguyên đơn đang chăm sóc con cái nên bị đơn không đến thăm con một cách suôn sẻ được, do đó Tòa án sẽ xử lý trước bằng quyền hạn của mình để bị đơn có thể thăm con.

-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우리 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을 먼저 이수할 것을 명합니다.

- 법원행정처에서 대동 통역인에게 테스트할 예문을 외국어별로 양식화하여 제작하고 각급 법원에 제공한다면, 각 재판부에서 비교적 간이하게 대동 통역인의 통역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3) 대동 통역인의 통역능력 강화 방안

### ▣ 책자 및 매뉴얼의 작성



- 외국인·이주민 중 통역료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이주노동자센터 등에서 해당 국가 언어를 지원하는 상담직원, 통역 자원봉사자 등을 통역인으로 대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이주노동자센터 등에 법정 통역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책자나 매뉴얼, 법률 및 재판절차 등의 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책자, 매뉴얼을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정 통역인 편람 중 법정 통역인의 주의사항,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 등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책자로 만들어 법원이나 법정에 비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협의이혼 등의 가사 사건에서 대동 통역인이 통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절차에 관한 안내문 또는 가사절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책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가정법원 및 가사재판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연수 및 교육 기회 제공

- 법원에 수시로 방문하여 통역을 하는 상담직원, 통역 자원봉사자 등을 상대로 법정 통·번역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판사나 가사조사관, 참여관 등이 법률이나 재판절차, 통역 등에 관한 교육, 강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4) 분과위원회 의견

#### ■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대동통역인의 통역능력 검증 및 강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다수 의견

## 마. 원격 통역 활용

### 1)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 통역의 가능성



## ▣ 2021. 11. 18. 영상재판의 활용 가능성을 개선한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

- 민사재판의 경우 통역인은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및 심문기일 등에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sup>8)</sup>를 이용하여 통역할 수 있음
-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기일에 통역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등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통역할 수 있음
-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을 위한 물적 시설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영상재판담당자를 지정하였음

### 2) 의의

-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시행,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의 시행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 통역의 제도적·물적 가능성은 확보한 상황임
- 민사재판의 경우 통역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등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택, 직장 등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원격 통역을 할 수 있음
-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기일에는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만을 통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통역에 제한이 있으나, 통역인은 거주지 인근 법원에서 중계시설을 이용한 원격 통역을 할 수 있음

### 3) 활용 방안

8)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주로 영상재판 참여자가 거주지 근처에 있는 법원 관리 중계시설로 출석하게 되고, 인터넷 화상장치는 주로 영상재판 참여자가 본인의 사무실, 자택에 있는 장치를 이용하게 됨. 민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중계시설은 법원직원이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법원의 감독권이 미치는 장소이고, 화상장치는 증인의 주거지, 사무실 등 그러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임



## ▣ 인증(준인증) 통역인을 원격 통역인으로 우선 고려

- 인증(준인증) 통역인은 통번역인 인증평가에서 우수한 통역능력을 검증받은 통역인으로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증(준인증) 통역인이 비수도권 소재 법원에 우수한 법정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수 언어의 통역인이 부족한 각급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인증(준인증) 통역인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통역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개설함으로써 인증(준인증) 통역인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 통역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기일에는 비디오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계시설을 통한 원격 통역만이 가능하므로, 인증(준인증) 통역인들에게 거주하는 곳 인근 법원에서 쉽게 원격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통번역인 명부조회 프로그램은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이 원격 통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데, 원격 통역 가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격 통역을 한 경력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면, 인증(준인증) 통역인을 원격 통역인으로 지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용이함
- 인증(준인증) 통역인이 원격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정 통역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력 있는 통번역인이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에 더욱 많이 지원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상근 법정통역인 제도의 도입 검토

- 민사, 행정, 가사, 형사 분야 모두 원격 통역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 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소수 언어 전문 통역인을 채용하여 전국 법원에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소수 언어의 경우 특히 지방에서 통역인 자원을 찾기 어려운데, 원격지 법원에서 법정 통역의 수요가 있을 경우 상근하는 영상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통역인 선정 등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 검증된 소수 언어 통역인을 영상통역에 활용함으로써 법정 통역의 질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영상통역의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법정통역센터 상근 인원에 대한 일정한 급여 지급으로 통·번역료, 여비, 일당 등의 지급을 대체함으로써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도 통역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016. 7.부터 서울행정법원에 ‘통·번역 사법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영어/프랑스어 통역인 1명이 상근하고 있는바, 서울행정법원 ‘통·번역 사법지원 센터’를 확대하거나, 외국인 사건 수가 많은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새롭게 통역인을 채용한 후 전국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는 전국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이주민 관련 사건에서 필요한 소수 언어 통역의 수요를 산정하고, 상근 법정통역인을 고용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비용 및 대체할 수 있는 통역료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상근 법정통역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언어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통합통역 네트워크 제도와의 통합 시행을 고려할 수 있고, 상근 법정통역인에게 원격 민원 통역을 맡기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 원격 통역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홍보

- 재판에서의 영상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2021. 11. 17. 시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는 재판부가 영상재판보다 대면 재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법원 구성원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영상재판과 원격 통역의 활용 가능성을 홍보하고 외국인 사건 전담재판부 및 인증 통역인을 대상으로 원격





통역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필요함

#### 4) 분과위원회 및 실무자 의견

##### ■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원격 통역인으로 활용하고, 소수 언어의 상근 법정통역인을 고용하여 원격 통역인으로 활용하여 원격 통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견

##### ■ 실무자 의견

- 인증 통역인들은 원격 통역이 활성화될 경우 법원에서의 통·번역 기회가 증대될 수 있고, 거주지 외 법원에서 통역할 경우 실비보다 적은 여비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과 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원격 통역 활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
- 다만 원격 통역이 활성화될 경우 인증 통역인들에게 법정 통역 기회가 집중되어 일반 통역인 후보자는 법정 통역 경험을 통하여 실력을 향상하고 인증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실력 있는 법정 통역인 양성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인증 통역인의 의견도 있었음
- 법원 직원도 법원 소재지에서 통역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타 지역 거주 통역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여비 지급 기준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격 통역을 활용할 경우 법정 통·번역인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

## 6.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개선 방안 검토

### 가. 사법절차 통·번역 연계 강화

#### 1) 개요

-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주민에게 재판 전 단계부터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소개하여 외국인·이주민 당사자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상



담 등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통번역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2) 법정 통역인 선정 현황

### ■ 형사 재판절차

- 외국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외국인 피의자를 위한 통역인을 선정하나, 통역인 선정의 효과가 이후의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까지 유지되지는 아니함
  - 즉,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이후의 수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선정한 통역인의 통역을 받고, 공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새롭게 통역인을 선정해야 함
- 외국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통역인을 선정하나, 통역인은 공판절차에서만 통역을 하고 재판 외 절차에서는 통역하지 아니함

### ■ 형사 재판 외 재판절차

- 법원은 당사자나 증인이 외국인일 경우 통역인을 지정하여야 하나, 재판 전 단계 또는 변론 외 절차에서 외국인 당사자를 위하여 통역인을 선정하지는 아니함

## 3) 필요성

### ■ 외국인·이주민 당사자에게 재판 준비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한국어 해독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주민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대리인과 상담하고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도 통·번역인의 보조가 필요함
- 외국인·이주민 당사자가 소송대리인과 상담·접견하면서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당사자가 충실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음

### ■ 인증 통·번역인의 통·번역 업무 기회 확대



- 인증 통·번역인이 법원에서의 통·번역 업무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 인증 통·번역인은 법원 외에서도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므로, 그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다면 우수한 통·번역인이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에 지원할 만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4) 구체적 구상(안)

##### ■ 인터넷상에 인증 통·번역인의 명단 공개

- 법원의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JIFI)에 인증 통·번역인의 명단과 통역 가능한 언어, 주요 경력, 연락처 등을 소개하여 일반인이 인증 통·번역인에게 통·번역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
  - 기재할 사항으로는 학력(전문 분야), 통역 경력, 통역 분야(언어), 통역인 지정 횟수, 기관 혹은 회사 근무 경력, 자격증, 주요 저서 및 논문, 국적, 소송 사건 당사자 경력, 귀화 여부, 소재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앞서 제시한 통·번역인 후보자 조회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으로 전제로, 전산프로그램과 인터넷상 후보자 명단을 연동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인터넷상에 인증 통·번역인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민사 및 형사 등의 재판관을 준비하는 외국인·이주민 당사자들이 법원의 소개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인증 통·번역인의 통·번역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유관기관에 대한 인증 통·번역인 명단의 공유

- 수사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체적으로 채용 통·번역인 또는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자체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만으로는 통·번역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언어의 통·번역인을 확보하여야 함
  - 검찰은 통역인 운영규정(대검 예규 제1281호) 제2조 제1항에서 각급 검찰청의장이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찰청별로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



- 경찰은 경찰서별로 내부적으로 통역수사관을 지정하고, 민간인 통역요원을 선발하여 명단을 관리하는데, 민간인 통역요원의 수가 통역수사관의 수보다 월등히 많고, 민간인 통역요원이 수사기관에서의 통역에 참여하는 비중이 매우 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별로 1~4명의 통·번역인을 채용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센터에 필요한 통·번역인이 없을 경우 타 센터의 협조를 받음
- 통·번역인의 보조가 필요한 유관기관에 인증 통·번역인의 명단을 공유함으로써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업무에 인증 통·번역인을 활용할 수 있음
- 인증 통·번역인은 법원에서 검증한 통·번역인으로서, 법정 통·번역뿐만 아니라 재판 전 단계 및 수사절차에서의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전문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 형사 재판절차에서의 활용

- 수사기관의 자발적 활용
  - 수사기관에 인증 통·번역인 명단을 제공하면, 수사기관에서 통·번역인이 필요한 경우 명단을 토대로 통·번역인을 선정하여 수사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의 활용
  - 외국인·이주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통·번역인을 선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과의 상담 및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단계에서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 해당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 및 검찰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통·번역인을 법정 통·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공판단계에서의 활용
  -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될 경우 재판부는 통역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통역인에게 재판 외에서 변호인과의 상담 및 접견 등에서도 통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 ▣ 형사 재판 외 재판절차에서의 활용

- 민원상담 시 및 소 제기 또는 신청사건 접수 시부터 외국인·이주민에게 인증 통·번역인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해당 외국인·이주민이 사용 가능한 언어와 거주지 및 법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증 통·번역인을 소개함
- 인증 통·번역인은 외국인·이주민의 변호사 접견 및 상담 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이주민으로부터 통·번역 비용을 지급받음
- 외국인·이주민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부는 해당 통·번역인의 공정성·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통·번역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통·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 ▣ 예규 개정

- 통번역예규에서 통·번역인 명단 공개 및 공유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예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제7조의3 (인증평가의 실시)

-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통역·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각급법원은 제2항 기재 인증 통역·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인증 통역·번역인의 동의를 받아 그 명단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⑤ 각급법원은 인증 통역·번역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통역·번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4 (통역·번역인의 지정 등)

- ① 참여사무관등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번역



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 ② 통역·번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2600], 통역·번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63] 과 같이 한다.
- ③ 통역·번역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제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 통역·번역인의 통역·번역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한 소가 계속될 경우 당해 인증 통역·번역인을 법정 통역·번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 통·번역인의 교육

- 통·번역인이 법정에서의 통·번역뿐만 아니라 재판 외 절차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통·번역을 담당하게 되므로, 통·번역인의 독립성·공정성 및 수사단계 또는 상담절차에서의 통·번역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함
- 법원은 주기적으로 법정 통·번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재판 외 절차에서의 통·번역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과정 추가 개설 시 수사기관 및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과정을 위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6) 통·번역인에 대한 제재

- 통·번역인이 반드시 재판절차에서 법정 통·번역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이를 주지할 필요가 있고, 법정 통·번역인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통·번역 보조를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당해 통·번역인의 공정성·중립성에 의심 가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통·번역인을 법정 통·번역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통·번역예규 제7조의5에서 정한 통·번역인 지정의 취소 사유를 참고할 수 있음
- 통·번역인이 특정 사건에서 부실하거나 잘못된 통·번역을 하는 것을 넘어서 외국인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통·번역인의 인증 취소 및 법원에서의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 취소 등의 제재가 필요함



- 통번역예규 제7조의2 제3항 제2호는 통·번역인이 직무상 위반, 그 밖에 통역·번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철저한 제재 집행이 필요함

## 7) 제도의 한계

### ■ 통·번역인 소개의 한계

- 통·번역인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설 업체가 있으므로, 사법부가 통·번역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비판의 소지가 있음
- 법원의 인증 통·번역인 명단 공개·공유는 사법절차상 통·번역 보조가 필요한 외국인·이주민 당사자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 통·번역 비용의 부담 문제

- 재판 외 절차에서 통·번역에 소요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도 재판 외 절차에서 지출한 통·번역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환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수사기관이 통역인에게 지급하는 통역료는 시간당 3만 원 ~ 3만 5,000원으로 법원이 지급하는 통역료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인증 통역인이 위와 같은 통역료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통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음

### ■ 통·번역인의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명단의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 공유는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통·번역인들은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통·번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만약 법원에서 소개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통·번역인이 당사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법원 또는 법원 담당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8) 분과위원회 및 실무자 의견

### ■ 분과위원회 의견

- 재판 전 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이주민에게 인증(준인증) 통·번역인을 소개하여 통·번역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
- 한편 통·번역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통·번역을 맡게 된다면 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선정한 통·번역인은 수사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반면, 법원에서 인증하고 선정한 통·번역인의 경우 수사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적고, 통·번역인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통·번역인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 재판 외 절차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사람이 통·번역을 수행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각 단계마다 통·번역인을 달리 선정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인증 통·번역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될 우려는 없는지, 인증 통·번역인이 외국인 지역사회에서 법조브로커화 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법원이 확인·제공하는 것은 ‘법원에서 사법절차 통·번역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에 한하는 것인데, 마치 해당 통·번역인이 재판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통·번역인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고, 법원이 소개한 통·번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법원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칠 여지도 있으므로, 법원이 소개한 통·번역인이 반드시 재판절





차에서 통·번역인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등을 명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통·번역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법원의 경고, 인증취소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 검찰·경찰과 같은 대외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기관들이 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줄지 우려된다는 의견
- 법원에서 재판 전에 법정 통역인과 당사자의 접견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

#### ■ 실무자 의견

- 인증 통역인들은 대체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나, 수사기관에서의 통역은 보수가 현저히 적어 수사기관에서 통역하려는 인증 통역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역인의 인적사항이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변호사들은 외국인·이주민이 재판 전에도 통·번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
- 다만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는 긍정하면서도, 이미 외국인·이주민에게 무료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있으므로, 외국인·이주민이 재판 외 절차에서의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음
- 법원 직원들은 대체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

#### ■ 논의 결과

- 법원이 외국인·이주민에게 재판 외 절차에서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원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수사기관이나 외국인·이주민이 직접 통·번역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외국인·이주민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해당 안건을 검토·추진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

## 나. 외국인·이주민의 민원 응대 개선

### 1) 개선 방안

#### ▣ 외국어로 작성된 민원 안내문 및 양식의 확대

- 각급 법원에서 다국어로 민원인 안내문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행정처 등에서 통일적인 형식으로 민원인 안내문과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양식을 제작하여 각급 법원에 배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등 각 가정법원에서는 홈페이지에 다국어로 이혼 소송의 제기, 재판상 이혼 사유, 소송 또는 재판절차의 개요, 외국인을 위한 통역 및 소송구조 안내 등을 설명하는 이혼절차 안내서를 게시하고 있고, 부산가정법원은 외국인을 위한 협의이혼 안내 책자를 민원접수창구, 가사과 접수계에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여 통일적인 형태의 자료나 양식으로 전산화하여 제공함이 바람직함

#### ▣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JIFI)와의 연동

- 법원의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JIFI)에서는 다국어로 제작된 재판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자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법원행정처 등에서 통일적인 형식으로 다국어 민원인 안내문 및 양식을



제작하여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외국인·이주민은 온라인상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대면 및 유선 민원과정에서 발생하는 통·번역의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음

## 2) 분과위원회 및 실무자 의견

### ▣ 분과위원회 의견

-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안내문과 필요한 양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견

### ▣ 실무자 의견

- 법원 직원, 인증 통역인, 변호인도 외국어로 된 민원양식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

## 다. 온라인 접속 지원의 개선

### 1) 현황 및 문제점

#### ▣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

- 사법부는 현재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인 ‘JIFI’ 를 개설하여 운영
-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법원 소개, 민사형사가사 등의 소송절차 안내, 법원 위치 등 정보 제공
- 법원안내, 소송절차안내, 민사형사가사절차의 안내문, 재판양식 등의 자료를 16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워드, 한글, PDF 파일 형태로 제공
-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

#### ▣ 문제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주민뿐만 아니라 상담가나 변호사 등도 전용 홈페이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외국인·이주민 대상 민원



업무는 실질적으로 대면 또는 유선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전용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공되므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주민은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
  - 법원안내, 소송절차안내, 재판양식 등의 자료는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몽골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16개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전문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이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2) 개선 방안

-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외국어의 확대
  - 영어, 중국어 → 자료 제공의 16개 외국어 등
  - 참고로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사이트인 '다누리'는 한국어 포함 13개 언어로 서비스 제공
- 구글사, 네이버사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번역서비스와 연동하여 번역기능을 제공하는 방안
  - 다누리 포털사이트에서는 구글사의 번역서비스와 연동하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미국의 일부 주법원에서 구글사의 지원을 받아 번역기능을 탑재하면서 잘못된 번역에 대하여 법원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음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판 관련 양식의 확대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가사절차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양식은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청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3개에 불과함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에 관한 양식 등 당사자에게 필요한 양식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



- 더 많은 양식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제공의 확대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외국인·이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국적 취득, 난민 관련 재판에 관한 안내 등
- 외국인·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안내하는 페이지나 이와 연동되는 링크를 제작하고, 위 외부 기관에 사법부의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 홍보배너를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필요도 있음
  -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 홍보 확대 및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대사관, 영사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홈페이지의 존재 및 유용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법관 및 직원들도 전용 홈페이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 내부적으로도 홍보 활동이 필요함
-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경우 법원의 외국인·이주민 대상 민원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이주민이 사법절차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3) 분과위원회 및 실무자 의견

#### ■ 분과위원회 의견

-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이주민에게 필요한 언어와 양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견

#### ■ 실무자 의견

- 인증 통역인, 법원 직원, 변호사는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를 알지



못하거나 활용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를 활성화한다는 안건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견

## 7. 종합의견

### 가. 재판에서의 통·번역 시스템 개선 방안

- 통·번역인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갖추고, 통·번역인 후보자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건의함
  - 통·번역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통·번역인 후보자의 법정 통·번역 경력 및 기타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통·번역이 필요한 사건에서 적절한 법정 통·번역인을 지정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통·번역인의 평가 및 경력 구체화는 통·번역예규의 개정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나, 그 외에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어 현재 단계에서 추진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개선 방안으로 통·번역인 풀(pool)의 확대, 인증제에 대한 법원 대내외 홍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건의함
  - 현재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있고, 일반적으로 인증 통·번역인이 미인증 통·번역인보다 수준 높은 법정 통·번역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증 통·번역인을 최대한 확보하여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활성화할 필요 있음
- 통·번역인 교육 개선 방안으로 ① 교육 내용의 충실화, ② 교육 대상의 확대, ③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건의함
  - 현재 형사절차에 집중된 교육 내용과 강의형 교육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하고(민사가사 절차나 일반 법률지식에 관한 교육과정 추가),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 있음
- 대동 통역인의 통역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



## 의함

- 외국어로 기재된 예문을 한국어로 통역하게 함으로써 대동 통역인의 통역 능력을 검증할 것과 대동 통역인을 위한 책자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연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 있음
- 또한 대동 통역인이 법정 통역에 필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책자나 매뉴얼을 제작하여 재판 전에 이를 숙지하게 하고, 수시로 법원에서 통역을 하는 대동 통역인을 상대로 법정 통·번역 교육에 참여하게 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시행할 경우 대동 통역인이 재판절차에서 필요한 통·번역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소송법의 개정 등으로 영상재판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증 통역인을 원격 통역인으로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상근 법정통역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함

- 민사, 행정, 가사, 형사 분야 모두 원격 통역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 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소수 언어 전문 통역인을 채용하여 전국 법원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음
- 소수 언어의 경우 특히 지방에서 통역인 자원을 찾기 어렵는데, 원격지 법원에서 법정 통역의 수요가 있을 경우 상근하는 영상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통역인 선정 등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검증된 소수 언어 통역인을 영상통역에 활용함으로써 법정 통역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영상통역의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개선 방안

### ▣ 외국인·이주민이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절차 통·번역 연계 강화를 건의함

- 외국인·이주민이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이주민에게 인증 통·번역인을 소개하고 수사기관과 협력



---

할 필요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민원 안내문 및 양식을 확대 제작하고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민원 응대를 개선할 것을 건의함
-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언어와 민원 양식 및 자료를 확대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이주민의 온라인 접속 지원을 개선할 것을 건의함